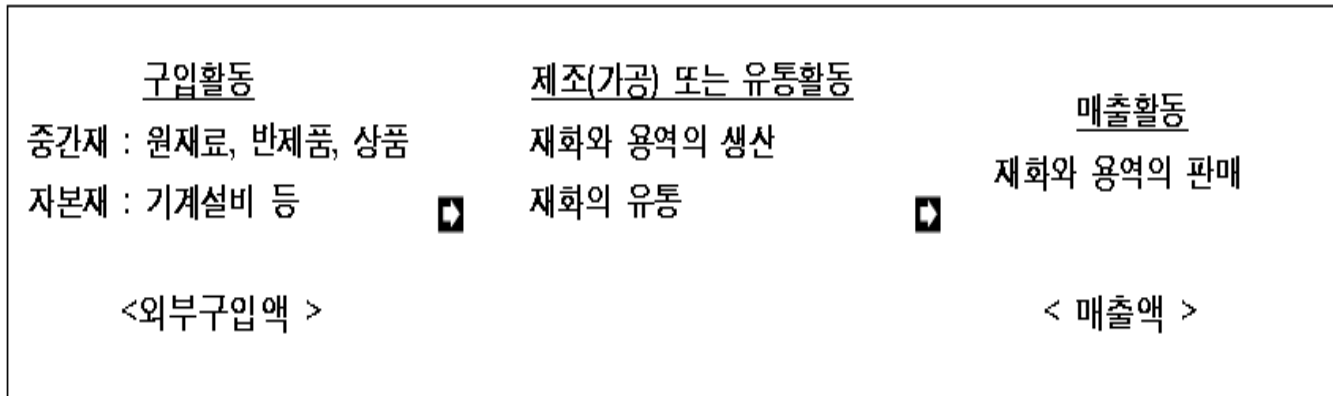


제철 부가가치세의 인의와 특징

1. 부가가치세의 인의

- 부가가치(value added) : 사업자(기업)가 생산 또는 유통을 통하여 창출한 가치 중기분
- 사업자의 부가가치창출과정



※창출된 부가가치(임금.지대.이자.이윤 등의 형태로 분배) =매출액 - 외부 구입액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특징	내 용
국세, 보통세	부과권자가 국가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을 구성한다(단, 부가가치세 세수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출(사용목적)을 한정하지 않은 세목이다.
소비형부가가치세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지출(최종소비자에게)만 과세된다. (국민소득 중 투자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전단계세액공제방식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한 후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간접세	입법시점에 납세인무자와 담세자(실제 조세 부담자)가 다를 것으로 예상.
다단계거래세	부가가치 생성단계(각 거래 단계)마다 과세한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가간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수출재화 등은 과세하지 않고 수입재화는 과세한다(수출재화 등에 대해 영세율제도 시행)
일반소비세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특정 항목에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와 구별)
신고납세조세	원칙적으로 납세인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인무가 확정된다.
면세제도	부가가치세 역진성 완화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의료 및 교육 용역 등에 대해 면세제도를 시행.
사업장 단위 과세	원칙적으로 사업자별로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단위로 과세하며 납세지도 사업장소재지로 한다.(예외: 종괄납부제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기간과세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을 집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납세인무의 성립 시기를 과세기간 종료일로 한다.
단순비례세율	10%의 비례세율로 과세된다.
물세(物稅)	납세인무자의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물세이다.

제 2 절 과세대상과 과세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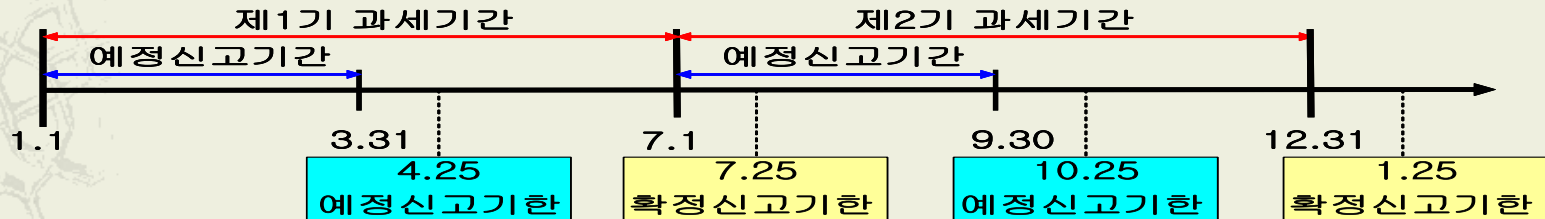
1. 과세대상

- ① 재환의 공급 ② 재환의 수입 ③ 용역의 공급

※ 재환과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수입재환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시점에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

1) 계속사업자인 경우(본래의 과세기간)



법인사업자 : 일반	●	○	●	○
개인사업자 : 일반	●	○	●	○
개인사업자 : 간이	(예정고지)	○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없다.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공급가액(매출액) + 부가가치세

2) 신규사업자 등(의제과세기간)

* 의제과세기간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과세기간 의제 사유	과 세 기 간
<p>개업자 (신규사업개시자)</p>	<p>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일 중 빠른 날 ~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p> <p>* 제조업의 개업일 : 제조장별 제조개시일</p> <p>* 광업의 개업일 : 사업장별 채취.채광개시일</p> <p>* 기타 사업의 개업일 :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p>
<p>폐업자</p>	<p>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p>
<p>피합병법인</p>	<p>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 합병등기일</p>
<p>간이과세포기</p>	<p>①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포기신고한 달의 말일(간이과세자)</p> <p>② 포기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일반과세자)</p>

제 3 절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1.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①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② 사업상 ③ 독립적으로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납세의무 이행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개인(자영업자)과 법인 포함

사업자의 요건	내 용
재화·용역의 공급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것
사업상 (계속적·반복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인 일사로 공급할 것
독립적	자기책임·자기계산으로 공급할 것(타인에게 고용 또는 종속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 근로자의 근로행위는 해당 안 됨)
영리목적 여부 불문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면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함(납세의무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이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대부분 면세대상이므로 실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인격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법인격 없는 단체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제외

2. 납세지

-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고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즉,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의 신고.

(예외: 주사업장 중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 사업장 :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1) 업종별 사업장

• 해당 사업별로 세법에서 규정한 장소

업종구분	사업장
광업	광업사무소 소재지.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포장·용기충전만을 위한 장소 제외)
건설업·운수업·부동산매매업	-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지점소재지 포함) - 개인:업무충괄장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단,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부동산임대의 경우 업무충괄장소
국가·지자체의 과세사업, 통신업, 전기판매업 등	업무충괄장소
비거주자, 외국법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의 국내사업장
다단계판매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소재지
무인자동판매기사업	업무충괄장소
통신판매업(사이버몰에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등록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가 아래의 업종별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함.
단,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공급 시는 예외.

2. 특수한 경우의 사업장

사업장의 유형	요건 및 내용
등록사업장	업종별 사업장 외의 장소로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된 장소 (무인자동판매기사업 제외)
사업자의 주소·거소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직매장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하치장은 제외)
임시사업장 (행사개최장소)	기존사업장에 포함, 따라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 불필요 예)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 하치장 :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치장으로 설치 신고한 장소.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임시사업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폐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임시사업장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

제 4 절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의 취지

- 납세의무자를 번호에 의하여 통제
- 과세자료의 양성화, 과세행정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

1. 사업자등록의 신청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또는 그 밖의 세무서 모두 가능/서면 또는 온라인신청).
- 예외: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
-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가능(취지: 사업개시전 매입분에 대해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미등록 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주요 첨부서류

-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확인 및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원관리 강화)
- ③ 사업허가증 사본(사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영세상인 보호목적)

※ 면세사업자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 겸영사업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등록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발급기한

- ① 일반적인 교부 :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에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
- ② 사실조사 교부 :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 확인하기 위해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교부가능

- 등록거부 : 세무서장은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사업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거부 가능(등록거부는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직권등록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 가능

3.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제재

제재유형	내 용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등록가산세	가산세액 = <u>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u> ×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미등록 또는 등록정정 미이행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4.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말소

(1) 사업자등록 정정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재발급기한내에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 중여로 인한 사업자명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아님(기존사업자 폐업, 신규사업자 등록!)

등록정정사유	재발급기한
상호 변경(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의 명칭, 인터넷 도메인이름 변경 포함)	신청일 당일
법인 또는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사업의 종류의 변경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칭이 변경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임대인, 임대차목적물 및 면적, 보증금,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 건물을 임차한 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중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중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중여로 인한 사업자명의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아님(기존사업자 폐업, 신규사업자 등록!)

(2) 휴·폐업 및 등록말소

• 휴업과 폐업

-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때,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등록말소

- 폐업, 사업개시 전 등록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사업자등록증 회수,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

구분	등록말소 여부	휴폐업의 기준일
휴업	×	사업장별 실질적인 휴업일 * 계절적 사업 :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휴업일 불분명시 :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
폐업 (합병소멸포함)	○	사업장별 실질적인 폐업일 * 청산중인 법인 : 폐업승인 얻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폐업일 불분명시 :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
사업 미개시	○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날 : 등록일로부터 6 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사업장설치기간 6 월 이상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개시 지연시 적용배제)